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2장 휴 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 6월이상 1년미만 | 6일 |
| 1년이상 2년미만 | 9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2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 6년이상 | 21일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5와 같이 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 참가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1항의 시행일(2010년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 직 자 의 행 동 률

| 대 민 관 계 | 대 내 관 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 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5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신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11월 25일

군산시 조례 제952호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군산시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산시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6조(공포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산시보(市報)(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8조(공포일·고시일) 제6조의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조례·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9조(시행일) 조례·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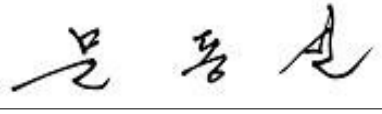
제10조(조례·규칙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11월 25일

군산시 조례 제953호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지원과장, 임피면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4.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시설계장, 서기는 장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주민지원협의체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기금운영 및 관리

제16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종류·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복지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 복지시설계장

제18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21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내에 전년도의 기금 운용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칙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제4조 관련)

| 구 분 | 지 원 사 업 |
|---------|--|
| 1. 소득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 축산업 시설의 설치 ○ 상·공업시설의 설치 |
| 2. 복지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 관련사업 ○ 도로시설의 관련사업 ○ 교육·문화시설 관련사업 ○ 운동·오락시설 관련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상·하수도시설 관련사업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3. 기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

군산시 의회에서 의결한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0년 11월 25일

군산시 조례 제954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100리터 | 1,280원 | 150원 | 1,430원 |

주) 추가요금은 10 ℓ 당 15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

| 구분 | 수 수 료 | |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기본요금 (1.0m ³ 까지) | 16,730원 | 1,500원 | 18,230원 |
| 초과요금 (0.1m ³ 마다) | 1,210원 | 150원 | 1,360원 |

주) 0.1m³ 미만은 0.1m³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표7(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 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p>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00리터</td> <td>950원</td> <td>110원</td> <td>1,060원</td> </tr> </tbody> </table> <p>주) 추가요금은 10ℓ 당 110원으로 한다</p> <p>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요금 (1.0^m까지)</td> <td>12,400원</td> <td>1,100원</td> <td>13,500원</td> </tr> <tr> <td>초과요금 (0.1^m마다)</td> <td>900원</td> <td>110원</td> <td>1,010원</td> </tr> </tbody> </table> <p>주) 0.1^m미만은 0.1^m으로 본다</p>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100리터 | 950원 | 110원 | 1,060원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기본요금 (1.0 ^m 까지) | 12,400원 | 1,100원 | 13,500원 | 초과요금 (0.1 ^m 마다) | 900원 | 110원 | 1,010원 | <p>별표7(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과 같음) ○ (원안과 같음) <p>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100리터</td> <td><u>1,280원</u></td> <td><u>150원</u></td> <td><u>1,430원</u></td> </tr> </tbody> </table> <p>주) 추가요금은 10ℓ 당 <u>150원</u>으로 한다</p> <p>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약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과기준</th> <th colspan="3">수 수 료</th> </tr> <tr> <th>수집·운반</th> <th>처리</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요금 (1.0^m까지)</td> <td><u>16,730원</u></td> <td><u>1,500원</u></td> <td><u>18,230원</u></td> </tr> <tr> <td>초과요금 (0.1^m마다)</td> <td><u>1,210원</u></td> <td><u>150원</u></td> <td><u>1,360원</u></td> </tr> </tbody> </table> <p>주) 0.1^m미만은 0.1^m으로 본다</p>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100리터 | <u>1,280원</u> | <u>150원</u> | <u>1,430원</u>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기본요금 (1.0 ^m 까지) | <u>16,730원</u> | <u>1,500원</u> | <u>18,230원</u> | 초과요금 (0.1 ^m 마다) | <u>1,210원</u> | <u>150원</u> | <u>1,360원</u> |
| 부과기준 | |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리터 | 950원 | 110원 | 1,06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요금 (1.0 ^m 까지) | 12,400원 | 1,100원 | 13,5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요금 (0.1 ^m 마다) | 900원 | 110원 | 1,01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리터 | <u>1,280원</u> | <u>150원</u> | <u>1,430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준 | 수 수 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요금 (1.0 ^m 까지) | <u>16,730원</u> | <u>1,500원</u> | <u>18,230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과요금 (0.1 ^m 마다) | <u>1,210원</u> | <u>150원</u> | <u>1,360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산시 고시 제2010-12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11월 19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 2) 명 칭 : 군산 농업기술센터 증축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 분 | 시설명 | 결정조서 (㎡) | 실시계획 (㎡) | | 비 고 |
|------|--------|-------------|----------|--------|--------|
| | | | 당초 | 변경 | |
| 공공청사 | 농업기술센터 | 30,166 | 30,166 | 29,902 | 감 264㎡ |
| 소 계 | | | | 29,902 | |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농업기술센터)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7. ~ 2011. 7.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제외면적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 | | 이름 | 주소 | 이름 | 주소 | 권리내용 | | |
| 당초 | 1 | 개정면 운회리 | 633-7 | 대 | 9,704 | 9,704 | - | 군산시 | | | | | |
| 변경 | 1 | 개정면 운회리 | 633-7 | 대 | 9,704 | 9,704 | - | 군산시 | | | | | |
| 당초 | 2 | 개정면 운회리 | 633-8 | 답 | 5,034 | 5,034 | - | 군산시 | | | | | |
| 변경 | 2 | 개정면 운회리 | 633-8 | 답 | 5,034 | 5,034 | - | 군산시 | | | | | |
| 당초 | 3 | 개정면 운회리 | 633-121 | 답 | 4,222 | 4,222 | - | 군산시 | | | | | |
| 변경 | 3 | 개정면 운회리 | 633-121 | 답 | 4,222 | 4,222 | - | 군산시 | | | | | |
| 당초 | 4 | 개정면 운회리 | 633-122 | 답 | 2,977 | 2,977 | - | 군산시 | | | | | |
| 변경 | 4 | 개정면 운회리 | 633-122 | 답 | 2,977 | 2,977 | - | 군산시 | | | | | |
| 당초 | 5 | 개정면 운회리 | 634-11 | 구 | 66 | 62 | 4 | 안동철 |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12 | | | | |
| 변경 | 5 | 개정면 운회리 | 634-11 | 구 | 66 | 62 | 4 | 군산시 | | | | | |
| 당초 | 6 | 개정면 운회리 | 634-12 | 구 | 66 | 66 | - | 장완식 |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41 | | | | |
| 변경 | 6 | 개정면 운회리 | 634-12 | 구 | 66 | 66 | - | 장완식 |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541 | | | | |
| 당초 | 7 | 개정면 운회리 | 634-13 | 구 | 66 | 66 | - | 성낙창 |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110 | | | | |
| 변경 | -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 - | - | - | - | - | 제외 |
| 당초 | 8 | 개정면 운회리 | 634-14 | 구 | 66 | 66 | - | 성낙인 |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330 | | | | |
| 변경 | -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 - | - | - | - | - | 제외 |
| 당초 | 9 | 개정면 운회리 | 634-15 | 구 | 66 | 66 | - | 국 | 농림수산부 | | | | |
| 변경 | -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 - | - | - | - | - | 제외 |
| 당초 | 10 | 개정면 운회리 | 634-16 | 구 | 66 | 66 | - | 이황로 | 옥구군 개정면 운회리 300 | | | | |
| 변경 | - | 개정면 운회리 | - | - | - | - | - | - | - | - | - | - | 제외 |
| 당초 | 11 | 개정면 운회리 | 634-31 | 답 | 3,814 | 3,814 | - | 군산시 | | | | | |
| 변경 | 7 | 개정면 운회리 | 634-31 | 답 | 3,814 | 3,814 | - | 군산시 | | | | | |
| 당초 | 12 | 개정면 운회리 | 634-32 | 답 | 2,913 | 2,913 | - | 군산시 | | | | | |
| 변경 | 8 | 개정면 운회리 | 634-32 | 답 | 2,913 | 2,913 | - | 군산시 | | | | | |
| 당초 | 13 | 개정면 운회리 | 634-65 | 도 | 1,110 | 1,110 | - | 군산시 | | | | | |
| 변경 | 9 | 개정면 운회리 | 634-65 | 도 | 1,110 | 1,110 | - | 군산시 | | | | | |
| 계 | | | 9필지 | | 29,906 | 29,902 | 4 | | | | | | |

군산시 고시 제2010-127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0년 11월 26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군산복합화력발전소)
 - 2) 명 칭 :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 분 | | 면적(m ²) | | 비 고 |
|-------------------|-------|---------------------|----------------|---|
| | | 당 초 | 변 경 | |
| 토 지 이 용 계 획 | 발전시설 | 41,129 | 41,129 | 가스 및 스팀 터빈, 제어실, 사무실, 경비실, 실내테니스장, 다목적 운동공간 등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224대) 공원 등 조경부지 |
| | 관리시설 | 19,007 | 19,007 | |
| | 교통시설 | 24,645 | 24,645 | |
| | 녹지시설 | 61,219 | 61,219 | |
| | 소 계 | 146,000 | 146,000 | |
| 건 축 계 획 | 건축연면적 | 39,047 | 39,041 | - |
| | 공작물 | 17개소 | 16개소 | - |

4. 사업시행자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 2010. 7. ~ 2010. 10. 31.
 - ▶ 변경 : 2010. 7. ~ 2010. 12. 15.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0 -12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나포면 주곡리 문화마을 도근점 설치에 따른 지적도근점(23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군 산 시 장

| 번호 | 기준점번호 | Bessel타원체 | | GRS80타원체 | | | 정표고(m) | 소재지 | 관측일자 | 표지재질 | |
|----|-------|-----------|-----------------------------------|--------------------|------|-----------|--------|--------|---------|---------|----|
| | | 평면직각좌표(m) |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타원체고(m) | 평면직각좌표(m) | 투영원점 | | | | | | |
| 1 | 51571 | X | 278676.22 | 36° 00' 29.96949" | X | 378982.77 | 중부 | 7.23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19.24 | 126° 49' 26.74931" | Y | 184091.51 | | | | | |
| | | | | 31.083 | | | | | | | |
| 2 | 51572 | X | 278655.85 | 36° 00' 29.31178" | X | 378962.41 | 중부 | 7.74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69.35 | 126° 49' 26.75143" | Y | 184141.62 | | | | | |
| | | | | 31.593 | | | | | | | |
| 3 | 51573 | X | 278638.64 | 36° 00' 28.75813" | X | 378945.20 | 중부 | 8.98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49.29 | 126° 49' 29.94472" | Y | 184221.55 | | | | | |
| | | | | 32.836 | | | | | | | |
| 4 | 51574 | X | 278629.47 | 36° 00' 28.46379" | X | 378936.02 | 중부 | 12.11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207.54 | 126° 49' 32.27151" | Y | 184279.81 | | | | | |
| | | | | 35.966 | | | | | | | |
| 5 | 51575 | X | 278614.34 | 36° 00' 27.97513" | X | 378920.90 | 중부 | 12.29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245.48 | 126° 49' 33.78766" | Y | 184317.75 | | | | | |
| | | | | 36.148 | | | | | | | |
| 6 | 51576 | X | 278597.13 | 36° 00' 27.41503" | X | 378903.69 | 중부 | 10.22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213.83 | 126° 49' 32.52510" | Y | 184286.10 | | | | | |
| | | | | 34.078 | | | | | | | |
| 7 | 51577 | X | 278606.77 | 36° 00' 27.72517" | X | 378913.32 | 중부 | 8.88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70.91 | 126° 49' 30.81042" | Y | 184243.18 | | | | | |
| | | | | 32.736 | | | | | | | |
| 8 | 51578 | X | 278590.52 | 36° 00' 27.19719" | X | 378897.08 | 중부 | 8.12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55.22 | 126° 49' 30.81042" | Y | 184227.49 | | | | | |
| | | | | 32.736 | | | | | | | |
| 9 | 51579 | X | 278553.51 | 36° 00' 25.99199" | X | 378860.07 | 중부 | 6.28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78.84 | 126° 49' 27.13811" | Y | 184151.12 | | | | | |
| | | | | 30.132 | | | | | | | |
| 10 | 51580 | X | 278601.47 | 36° 00' 27.54734" | X | 378908.02 | 중부 | 6.88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70.52 | 126° 49' 26.80205" | Y | 184142.79 | | | | | |
| | | | | 30.734 | | | | | | | |

| | | | | | | | | | | | |
|----|-------|---|-----------|--------------------|---|-----------|----|--------|---------|---------|----|
| 11 | 51581 | X | 278546.70 | 36° 00' 25.77072" | X | 378853.26 | 중부 | 6.20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73.12 | 126° 49' 26.91014" | Y | 184145.39 | | | | | |
| | | | | 30.056 | | | | | | | |
| 12 | 51582 | X | 278545.43 | 36° 00' 25.72790" | X | 378851.99 | 중부 | 6.12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47.26 | 126° 49' 25.87754" | Y | 184119.53 | | | | | |
| | | | | 29.978 | | | | | | | |
| 13 | 51583 | X | 278575.90 | 36° 00' 26.71237" | X | 378882.45 | 중부 | 5.28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3980.26 | 126° 49' 23.20007" | Y | 184052.53 | | | | | |
| | | | | 29.135 | | | | | | | |
| 14 | 51584 | X | 278528.96 | 36° 00' 25.19009" | X | 343785.50 | 중부 | 5.94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3988.00 | 126° 49' 23.51244" | Y | 173014.99 | | | | | |
| | | | | 29.787 | | | | | | | |
| 15 | 51585 | X | 278461.63 | 36° 00' 23.00751" | X | 378768.19 | 중부 | 6.01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20.21 | 126° 49' 24.80374" | Y | 184092.49 | | | | | |
| | | | | 29.871 | | | | | | | |
| 16 | 51586 | X | 278490.95 | 36° 00' 23.96084" | X | 378797.50 | 중부 | 6.18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058.21 | 126° 49' 26.31896" | Y | 184130.49 | | | | | |
| | | | | 30.038 | | | | | | | |
| 17 | 51587 | X | 278532.23 | 36° 00' 25.30581" | X | 378838.78 | 중부 | 8.32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54.87 | 126° 49' 30.17563" | Y | 184227.15 | | | | | |
| | | | | 32.180 | | | | | | | |
| 18 | 51588 | X | 287565.90 | 36° 00' 26.39941" | X | 378872.46 | 중부 | 9.06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70.99 | 126° 49' 30.81653" | Y | 184243.26 | | | | | |
| | | | | 32.917 | | | | | | | |
| 19 | 51589 | X | 278573.34 | 36° 00' 26.64225" | X | 378879.90 | 중부 | 9.61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98.30 | 126° 49' 31.90679" | Y | 184270.57 | | | | | |
| | | | | 33.468 | | | | | | | |
| 20 | 51590 | X | 278586.05 | 36° 00' 27.05734" | X | 378892.61 | 중부 | 11.30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245.88 | 126° 49' 33.80551" | Y | 184318.15 | | | | | |
| | | | | 35.157 | | | | | | | |
| 21 | 51591 | X | 278561.27 | 36° 00' 26.25236" | X | 378867.83 | 중부 | 9.94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225.15 | 126° 49' 31.67956" | Y | 184297.42 | | | | | |
| | | | | 32.881 | | | | | | | |
| 22 | 51592 | X | 278544.27 | 36° 00' 25.69879" | X | 378850.83 | 중부 | 9.02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92.56 | 126° 49' 31.67956" | Y | 184264.83 | | | | | |
| | | | | 32.881 | | | | | | | |
| 1 | 51593 | X | 278489.18 | 36° 00' 23.90897" | X | 378795.74 | 중부 | 11.540 | 나포면 주곡리 | 10.9.30 | 철재 |
| | | Y | 184151.80 | 126° 49' 30.05599" | Y | 184224.07 | | | | | |
| | | | | 35.396 | | | | | | | |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063-450-4261)

군산시 고시 제2010- 129호

공유수면 소규모매립면허(고군산군도 연결도로공사)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6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을 면허하였기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1. 23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군산시 2010 - 1(2010.11.23)
- ② 면허를 받은자의 주소 성명
-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③ 매립목적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공사
- ④ 매립장소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4-132 인전공유수면
- ⑤ 면 적 : 244m²
- ⑥ 매립공사기간 : 2009.12. ~ 2013.12
- ⑦ 붙 임 :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면허(협의·승인)증. 끝.

군산시 고시 제2010-130호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 고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옥구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으로 승인(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7호, 관보 2005. 12. 28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25일

군 산 시 장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지방소도읍을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 명 칭 : 옥구읍 웰빙커뮤니티 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8-14번지 일원
- 면 적 : 3,618m²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조촌동 888)
- 성 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0. 11. ~ 2011. 12.
- 내 용 : 건물1동(지상3층) 신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계획실용 생략 (전라북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번호 | 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소유자 | | 비고 |
|----|---------|-------|----|---------------------|-------|----------------|-----|----|
| | | | | 지적 | 편입 | 주소 | 성명 | |
| 1 | 옥구읍 선제리 | 98-11 | 전 | 279 | 279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2 | " | 98-13 | 대 | 331 | 331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3 | " | 98-14 | 대 | 1,148 | 1,148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4 | " | 98-20 | 전 | 398 | 398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5 | " | 98-24 | 전 | 107 | 107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6 | " | 98-26 | 임 | 303 | 303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7 | " | 98-28 | 임 | 1 | 1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8 | " | 98-32 | 대 | 34 | 34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9 | " | 98-34 | 대 | 2 | 2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0 | " | 98-37 | 전 | 47 | 47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1 | " | 98-38 | 전 | 172 | 172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2 | " | 98-39 | 임 | 179 | 179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3 | " | 98-40 | 임 | 17 | 17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4 | " | 98-41 | 임 | 442 | 442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5 | " | 98-42 | 임 | 85 | 85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16 | " | 449-4 | 대 | 73 | 73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번 | 군산시 | |
| 계 | | | | 3,618 | 3,618 | | |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 2010- 131호

신시도 배수갑문 분할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하여 지적도근점(16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군 산 시 장

| 지적측량기준점 | | Bessel 타원체 | | 토지소재 | 설치년월일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 |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 | | | |
| 명칭 | 번호 | X(m) | Y(m) | | | |
| 지적도근점 | 6003 | 259786.30 | 153882.26 | 새만금방조제내 | 2010.1.29 | 토지정보과 |
| " | 6004 | 259636.77 | 153802.13 | " | " | " |
| " | 6005 | 259501.77 | 153694.37 | " | " | " |
| " | 6006 | 259328.52 | 153558.28 | " | " | " |
| " | 6007 | 259188.67 | 153448.41 | " | " | " |
| " | 6008 | 259006.54 | 153305.29 | " | " | " |
| " | 6009 | 258873.10 | 153200.48 | " | " | " |
| " | 6010 | 258694.42 | 153060.13 | " | " | " |
| " | 6011 | 258557.79 | 152952.80 | " | " | " |
| " | 6012 | 258387.70 | 152819.21 | " | " | " |
| " | 6013 | 258239.87 | 152714.55 | " | " | " |
| " | 6014 | 258047.12 | 152640.06 | " | " | " |
| " | 6015 | 257906.27 | 152675.69 | " | " | " |
| " | 6016 | 257747.80 | 152672.20 | " | " | " |
| " | 6017 | 257529.00 | 152796.50 | " | " | " |
| " | 6018 | 257228.28 | 153029.81 | "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공람공고

군산시공고 제 2010 - 182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

군 산 시 장

- 1. 공람사항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
-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3.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0-4446, Fax. 063-452-8171)
- 4. 입안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483 | 6 | 국지 도로 | 819 | 나운동 소2-190 | 미룡동 소3-353 | 일반 도로 | - | 군산고242 (03.4.27) | |
| 변경 | 소로 | 3 | 483 | 6 | 국지 도로 | 819 | 나운동 1242-26 | 미룡동 소3-353 | 일반 도로 | - | | 선형 및 가각변경 |

- 5.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 : 실음 생략 (공람장소 비치)
- 6. 관계도서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